

금오공과대학교계약학과학사운영규정

제정 2005. 3. 2. 규정 제415호

1차 개정 2005.11.28 규정 제437호 2차 개정 2006. 2.24 규정 제445호

3차 개정 2007. 1.30 규정 제470호 4차 개정 2007. 8.23 규정 제499호

5차 개정 2009. 9. 9 규정 제5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 및 금오공과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4)

제2조(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1에 한 한다.(개정 2006.2.24)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3조(정원) ①계약학과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2.24, 2009.9.9)

②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 명칭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6.2.24, 2007.1.30)

제4조(지원자격) 계약학과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6.2.24)

제5조(학생선발) ①계약학과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개정 2006.2.24)

②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2.24)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 일수는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24)

제7조(재학 및 수업연한) 계약학과 재학 및 수업 연한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24)

제8조(수업방법 및 장소) ①계약학과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6.2.24, 2009.9.9)

②계약학과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제9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계약학과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 하여 교무연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점 및 성적인정)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금오공과대학교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11조(졸업학점) ①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며, 최소 이수 학점은 교양은 20학점 이상, 전공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제12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는 일반학과에 개설된 강의를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13조(전적대학 학점인정) ①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기당 18학점, 총7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정학점은 동일계열·비 동일계열 구분 없이 교양과목 12학점, 전공과목 20학점, 일반선택 40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72학점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한 학점만큼 일반선택 인정학점에서 이를 감한다.

③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2.24)

제14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①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개정 2006.2.24)

②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연구과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28)

제15조(시수인정) 전임교원이 담당한 계약학과의 강의시수는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강사료 등 강의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학과 납부금 관리 회계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제16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6.2.24)

②등록금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6.2.24)

제17조(등록금 납부) ①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6.2.24)

②계약학과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연구과 및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제18조(재학생의 자격부여)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을 하여야 재학생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19조(등록취소) ①학생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일전에는 등록 취소원을, 입학일 후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②학생의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르며, 등록금 환불에 관한 제반 서류를 계약학과 등록금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제20조(학적) ①학생의 학적은 학칙에 의거 적용한다.(개정 2006.2.24)

②제1항에 의하여 학생의 학적이 변경 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산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제21조(졸업자격시험)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 졸업 외국어 및 전공시험은 금오공과대학교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외국어 졸업자격인정은 해당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포함한다. (개정 2005.11.28, 2007.8.27)

제22조(학위수여) 학생이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교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학칙에 명시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증명서 발급) 계약학과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제 증명 및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①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2.24)

②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2.24)

③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또는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 경우에 재적중인 학생은 대학의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학업이수 및 납입금 등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2.24, 2009.9.9)

제25조(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학칙·금오공과대학교학사운영규정·기타 학사 관련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계약학과 등록금 약정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05. 3. 2. 규정 제415호)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28. 규정 제437호)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2.24. 규정 제445호)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30. 규정 제470호)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8.23. 규정 제499호)

이 규정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9. 9. 규정 제5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

명칭	정원(명)	학위명
모바일공학과	65명	공학사
산업경영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25명	